

제391회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12월8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14)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37)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65)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54)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69)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89)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22)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10)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09)
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59)
11.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07)
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08)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09)
14.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18)
1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17)
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86)
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46)
1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14)
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72)
2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34)
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86)
2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01)
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24)
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20)
2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61)
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06)
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04)
2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33)
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57)
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15)
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138)

상정된 안건

1.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4)	2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37)	4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5)	4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254)	4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69)	6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9)	6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2)	6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10)	7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9)	7
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9)	7
14.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818)	16
1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117)	29
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86)	29
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6)	29
1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4)	29
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2)	29
2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34)	29
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86)	29
2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01)	29
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4)	29
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20)	29
2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1)	29

(10시22분 개의)

○소위원장 박주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유법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전명,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4)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2페이지입니다.

법관의 성 비위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관과 관련된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는 금품

수수, 국고횡령, 배임은 5년이고 그 밖의 경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 밖의 경우에 있는 법관의 성매매,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이러한 성 비위 관련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들이 감사징계법에서 감사징계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셨기 때문에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보셨습니다.

다만 이 법에서는, 뒷부분에 저희가 수정의견을 마련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8조에 징계의결 등의.....

○유상범 위원 뒷부분이 몇 페이지?

○전문위원 허병조 4페이지에 있는 조문대비표에서 간단한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8조에 있는 ‘징계의결 등의 요구’ 이 용어 대신에 이 법에서는 ‘징계 등의 청구’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그렇게 고쳤고요.

다음은 7조의2(징계부가금) 내용 중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하위위임을 한 게 있습니다. 하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시행일이 당초 개정안에서는 공포한 날부터로 되어 있는 것을 법원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6개월 정

도 연장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법무부, 법원행정처 차례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법무부는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법원행정처는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법원행정처도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위원님들, 어제 사실은 다 의견을 주신 것 같아서……

○유상범 위원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 하위법령 정비 때문에 시행을 6개월 늦춘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법무부는 어떤가요? 법무부 징계 시효도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가요?

○전문위원 허병조 감사의 경우 어제 개정 내용에는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거라면 같은 식으로 시간을 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것도 우리가……

○전문위원 허병조 감사징계법에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제 개정 내용에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법무부는 특별히 시간이 필요 없다고……

○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송기현 위원 하위법령이 따로 없으니까?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

○이수진 위원 성범죄 관련된 것만 10년이고 나머지는 5년, 3년이에요?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3년 그다음에 금품수수·국고횡령·배임 등은 5년 그리고 성폭력 등 성 비위에 대해서는 10년 이렇게 나뉘는 거지.

○송기현 위원 국가공무원법상의 체계와 동일하게……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성희롱도 있는데 성희롱보다 아까 5년짜리 말씀하신 국고횡령이 뭐가 더 경중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기현 위원 일단은 다른 국가공무원들하고 같이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한 거라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따로 개정안을 내시지요.

○이수진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송기현 위원 예.

○유상범 위원 아니, 이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가·나·다목까지는 사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워낙 크고 어떻게 보면 시대정신의 측면인데 성희롱 부분이 포함돼서, 객관적으로 보면 금품수수나 국고횡령의 가벌성과 징계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송기현 위원 맞아요.

○이수진 위원 이것 체계가……

○송기현 위원 그런데 이것만 빼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지요.

○이수진 위원 우선 통과시키고?

○송기현 위원 예, 균형은 맞춰 놓고.

○유상범 위원 여기에 대해서 두 분 다 의견이 어떠신가요?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징계원인행위의 경중에 차이가 너무 큰데, 징계시효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게 좀 안 맞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넘어갔는데 의견이 있으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법원행정처에서는 다른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개정안에 동의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가, 나, 다에 나와 있는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이런 것하고 성희롱하고는 조금 경중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깊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송기현 위원 지금 여기만 빼면 법원이나 판사나 검사들의 경우에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차별을 주고 그 차이가 나는 것을 또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고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같이 고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과 똑같이 그건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개정안을 새로 내셔서 논의하는 쪽으로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유상범 위원 이게 국가공무원법 자체를 고쳐야 되는데……

○송기현 위원 그것도 같이 고칠 필요가 있지요.

○이수진 위원 유상범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체계적으로 내 주시면 우리가 바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평소에는 그쪽에서 늘 내더니 왜 이럴 때는 또……

○이수진 위원 아니면 제가 낼까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약간 체계상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 하지만 다른 법과의 균형을 위해서 일단 이 부분은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신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 그렇게 가십시오.

이게 자칫 잘못해서 사실은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돼요. 운영상 정말 잘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한번 이것은, 특히 라목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요?

○소위원장 박주민 저도 사실 지금 보니까 그렇긴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취지가 일단 이 부분은 하고 나중에 다시 입법을 통해서 개정하자고 하시는 거니까요.

○유상범 위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저희가 모르고 그렇게 개정한 게 아니라는 것은 의사록에 충분히 남겨 뒀고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37)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5)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254)

(10시30분)

○소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진선희 전문위원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진선희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부안을 포함해서 3개의 안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3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해서 가정폭력가해자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 등에 대한 증명서 열람·교부에 일정

한 제한을 설정하려는 입법취지입니다. 세부 내용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작년 8월 28일 날 헌법재판소는 등록법 14조 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했고요. 동 조항은 올해 말까지 적용기한이 고 기한 내에 개정되지 못하는 경우 효력을 상실합니다.

주요내용은 심판대상조항 제14조 1항은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로 인해 가정폭력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헌행법상 증명서 청구권자는 가족관계 법령에 따라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고 교부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증명서의 열람·발급·교부 등을 제한하려는 입법목적은 동일합니다. 다만 요건, 방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조웅천 의원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웅천 의원안은 가해자는 직계혈족인 피해자의 동의와 부당한 목적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웅천 의원안의 경우에는 법문상 피해자를 직계혈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 사건에서와 같이 직계혈족이 아닌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따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등록관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해자인지 여부 그 다음에 부당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기현 의원안과 정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자 본인과 그 직계혈족 중 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 열람·교부를 제한하거나 해제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고, 정부안은 송기현 의원안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피해자는 가해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해서 피해자 본인에 대한 열람·교부를 제한하는 경우 그다음에 피해자 외의 증명서를 열람·교부하는 경우에 기록사항의 공시를 제한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송기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과 그 직계혈족 중 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의 증명서에 대해서 열람·교부 청구를 제한하거나 공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안은 증명서 명의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열람·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열람·교부를 제한하거나 피해자의 정보를 가린 채 열람·교부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송기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가해자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한 사람 명의의 증명서 열람·교부 청구를 제한하거나 정보를 가리도록 하고 있는데 가해자 본인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안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눠놔기 때문에 열람·공시 제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다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증명서의 신청권자가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라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유출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예시는 설명을 드리면 남편이 가해자고 아내가 피해자고 그 사이에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남편의 부가 있는 경우에 정부안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의 증명서를 열람·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들 명의의 증명서는 열람·교부를 받을 수 있지만 아내의 정보는 가려진 상태, 공시 제한 상태로 열람·교부받게 됩니다. 따

라서 이 경우 피해자 정보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모의 증명서를 열람·교부받을 수 있고 남편의 부, 즉 할아버지가 손자의 증명서를 열람·교부받는 경우에는 아내의 정보가 가려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남편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법무부 의견 주시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조웅천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정보처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는 데 넘어서서 추가적으로 가해자의 부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까지 소명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송기현 의원님 안에 대해서 가해자라 할지라도 자녀의 친권관계 증명 등 자녀의 정당한 이익 등을 위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최소한의 권리보장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법원행정처 의견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출되어 있는 조웅천 의원안, 송기현 의원안 및 정부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는 의견을 냈었고요. 그 이후에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가 협의를 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해서 지금 10페이지에 그 요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협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검토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협의에 따른 수정의견으로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진선희 협의안에 대해서 잠시……

○소위원장 박주민 예, 말씀하시지요.

협의안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진선희 11페이지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일부 수정의견을 냈고요. 정부안에 대해서도 간접적 유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 기관과 그리고 전문위원실이 협의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정부안 중심으로 만들었고요.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법원행정처 수정의견과 같이 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가해자 외에 피해자가 지정한 사람까지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았고요.

가해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수정의견도 타당하기는 하나 인적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부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자·가해자 외에 제삼자의 경우에는 정부안처럼 피해자 정보를 가린 채 열람·교부를 허용하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접적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 수정의견과 같이 지정 대상 범위를 좀 더 넓게 하는 것으로 협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의 부분은요 2개 의원님 안과 정부안 그다음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법원행정처, 법무부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이 협의해서 만든 안에 대해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문구가 수정된 사항입니다. 특별히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고 수정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송기현 위원 수정의견이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잘 만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잘 해서 했고. 차장님, 다만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 법률안이 내용을 정한 것처럼 관련 정보를 가진 상태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시스템적으로 저희 실무진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송기현 위원 신청을 하고 나면 신청한 대로 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송기현 위원 저는 수정의견은 좋은 것 같습니다. 협의안이 적절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번 달 넘어가게 되면 아예 발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이걸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유상범 위원 정부안이나 행정처 안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그게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맞습니다.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간접적인 방식으로 피해자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하고 또 가해자 입장에서 그 피해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들을 조금 완화하는 그런 두 가지 정도가 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 여기서 말하는 공시가 어떤 경우지요, 공시?

○전문위원 진선희 피해자의 정보에 대한 부분이고요. 공시를 제한한다라는 말은……

○이수진 위원 예?

○전문위원 진선희 피해자의 정보요. 이름이라든가 생년월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공시를 말하는 것이고, 공시라는 표현은 사실 가족관계법에서 지금 처음 쓰기는 하는데.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공시의 경우가 뭐가 있어요?

○송기현 위원 공시가 공공의 게재판에 공식 내 보낸다는 게 아니고 드러나게 한다는 취지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진선희 예. 그 표현이 사실 법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라서 수정의견에서는 ‘정보를 가리고’라는 표현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뀌 나왔습니다. 제목만 그냥 공시라고 하고요.

○이수진 위원 아,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시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송기현 위원 수정된 협의안은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이수진 위원 다 바뀌었어요?

○전문위원 진선희 예.

○송기현 위원 잘 만든 것 같아요, 수정의견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실무적인 것을 가려 가지고 다 해서.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69)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9)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2)

(10시42분)

○소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선희 전문위원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희 채무자 회생 관련법 3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이미 심사를 거치신 내용이고, 그때 당시에 주요내용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 추이를 보면서 심사를 하자라는 것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올해 4월 26일 날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수정하였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법은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2년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이 채무자 회생법은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현행법 등을 감안하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법을 체계를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법무부 의견 주시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법무부는 지금 자료집 3쪽에 의견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찬성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법원행정처 의견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도 찬성입니다. 청년파산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송기현 위원 별도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유상범 위원님은 의견 없으세요?

○유상범 위원 여기도 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진선희 부칙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소위원장 박주민 예, 부칙.

○전문위원 진선희 시행일은 취업 후 학자금 상

환법과 날짜를 맞추고 적용례도 그 법하고 동일하게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면책허가를 받았지만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채무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똑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의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의사일정 법원조직법 심사하기 전에 한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주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3910)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709)

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859)

○소위원장 박주민 다음 의사일정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우선 조웅천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것은 형법상 특수중상해죄의 사물관할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조직법 32조, 합의부의 심판권이라고 해 가지고 합의부가 심판하는 내용이 1·2·3호로 되어 있습니다. 3호에 보시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래 합의부인데 다만 단서에 의해서 가부터 다시 또 제외되기 때문에 1심 단독판사사건이 됩니다.

첫 번째, 가목에 보시면 형법 제258조의2가 나오는데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다시 가시면 형법 제258조의2는 특수상해입니다. 그런데 그 밑의 표를 보시면 1항은 특수상해죄이고 2항은 특수중상해죄입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하면 1항과 2항에 있는 모든 죄가 1심 단독사건이 되는데 이것을 특히 2항 같은 경우에 특수중상해는 범죄행위가 특수한 형태도 있지만 중상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3페이지에 보시면 중상해죄하고 특수중상해죄를 비교했는데 중상해죄는 지금 합의부 관할로 되어 있는데 현행대로 하면 이것이 더 중한데도 불구하고 단독판사 관할로 돼 있어서 이것도 합의부로 하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의견이 있으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법무부는 어떻습니까?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법무부도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유상범 위원님 괜찮지요?

○유상범 위원 법원에서 이 사안을 단독사건으로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규정이, 안이 왔다고 갑자기 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그러면 법원에서 이 분류를 임의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근거로 그 당시에는 이것을 단독사건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게 합의부 관할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되면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뭐냐 하면 이게 법원에서 정한 게 아니고 법률로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사는 대법원 규칙으로 합의부에서 할 것인지 단독에서 할 것인지 정하는데요. 이것은 형사라서 위원님들께서

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마음이 급해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

통상 이게 합의사건이 아니더라도 사안 자체가 단순하고 입증이 어렵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단독사건으로 했던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2페이지를 보시면 왼쪽에 표가 있거든요. 1항은 특수상해죄이고 2항이 특수중상해죄인데요. 우리가 재판을 해 보면 특수중상해로 오는 사건은 굉장히 드뭅니다. 특수상해는 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상해는 정말 후유증이 남아서 장애를 유발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중상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무거운 범죄에 해당이 되어서 실무상 합의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허병조 위원장님 하나만, 통과됐을 경우에 다만 부칙에서 지금 현재 있는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 시행 당시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따른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래야 혼란이 좀 적겠지요.

○유상범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들어가지요.

○소위원장 박주민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허병조 다음은 법원조직법 중에서 송기현 의원하고 김용민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판사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경과조치 적용기간에 대한 조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행법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뒤 가지고, 표에 보시면 현행법이 나와 있는데 기간에 따라서 기간별로 경과조치를 뒤서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이렇게 경과조치를 두고 2026년 이후에는 10년 이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기현 의원안 같은 경우 이것을 5년씩 순차적 유예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안 같은 경우는 내년하고 2023년의 경우에만 법조경력 5년 이상, 7년 미만에 있는 자를 임용

예정 인원의 50%만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법원 의견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먼저 김용민 의원께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7페이지에 저희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법관을 임용할 때 2분의 1씩 법조경력자 비율로 나누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관한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6년의 경력 가진 사람과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2분의 1씩 하게 되면 그 경계선에 있는, 6년과 7년 사이에 있는 사람은 1년밖에 경력 차이가 안 나는데 임용 시 임용점수 커트라인에 차이가 있게 되어서 그 부분이 공무담임권에 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해서 혹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김용민 의원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 검토 의견이고요.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법이 개정 안 되었을 때 현행법에 따른 법관 수 예측을 해 보시면 2021년에 3122명 현원인데요.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7년 이상을 뽑게 되면 저희 예측으로는 매년 법관 수가 일정 수 이상 계속 감원이 되어서, 27명 감원이 되고 그다음에는 중간에 또 7명씩, 7명씩 이렇게 감원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또 10년 이상이 되면 37명씩 감원되는 효과가 있어서 결국은 2029년에는 오히려 법관 수가 현재보다도 적은 2927명 정도에 불과하게 되는 그러한 저희 예측 결과이고요.

송기현 의원님 안에 따라서 5년간 부칙으로 유예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부터 현원 증가가 1년에 83명 정도씩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2026년까지 법관 수가 3537명 정도로 늘어날 것 같고, 그러면 2027년부터 7년을 적용하면 그때 다시 또 법관의 현원이 줄어들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그나마 법관 수가 조금이라도 늘어서 현재 이런 사건처리 지체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는 송기현 의원님 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설명자료를 준비했는데 위원장님, 저희가 배포하고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박주민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배포를 좀 해 주시지요.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 사건처리 추이에 관한 설명자료라는 것을 저희가 배포해 드렸는데요. 민사사건 처리기간의 지난 통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민사1심 합의사건입니다.

2010년에는 처리기간이 228일이었는데 2021년에는 353일로 무려 100일이 넘게 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법원 민사항소도 보면 2010년에 180일이었는데 2021년에는 293일로 여기도 100일 이상씩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나마 고등법원이나 민사단독, 소액 이쪽도 더 지연이 되고 있지만 민사항소나 민사합의부보다는 적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항소부나 합의부를 운영하려면 배석판사가 필요한데 신규 법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규 법관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합의부·항소부가 줄어들어서 사건 적체가 더욱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재판받는 국민들에 대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넘기셔서 3페이지 보시면 형사처리기간이 있습니다.

형사도 보면 형사1심 합의사건의 처리기간을 보면 2010년에 228일이었는데 2021년에 348일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100일 이상 더 늦어지고 있고요. 지방법원 형사항소사건을 표를 보시면 2010년에 180일이었는데 2021년에 293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 100일 이상 늦게 되었고요.

그래서 형사사건도 역시 합의부·항소부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배석판사의 숫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법관이 앞으로 적정하게 충원이 안 되면 합의부와 항소부의 사건 적체가 더욱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자료의 7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제율이 있습니다.

장기미제율은 그 표에 보시면 민사1심 합의를 보면 2010년에 장기미제율이 0.9일이었는데요 2021년에는 5.68로 되어서 무려 지금 7배 정도

더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합의부, 1심 민사·형사와 민사합의부가 아주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자료로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이라는 자료를 보여 드리면 1페이지에 보시면 주요국 법관 업무량 비교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일단 법관 수만 한번 비교를 해 보면 독일이 2만 3000명이 넘고요. 프랑스가 7000명이 넘습니다. 일본이 38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는, 이게 기준이 2019년입니다, 지금 2900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보다 한 1000명 가까이 판사가 적는데 민사본안사건하고 형사본안사건 수를 보면 일본만 보더라도 58만 건이 거든요, 합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려 137만 건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담당해야 될 본안사건 수가 일본의 경우에는 법관 일인당 151건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관 일인당 464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판사들이 사건을 굉장히 많이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자료 4페이지의 위의 상단 한번 보시면 저희가 2018년에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법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신 변호사님들 숫자가 94%고요. 그 이유는 법원의 업무과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가 69%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건만 해도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고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법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내년 7월부터는 군사법원 사건의 대부분이 민간법원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사건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계속 요구하시는 게 전문법원을 설립해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해사법원, 노동법원 이런 것 설치를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정법원도 지금 전국에 몇 군데 없는데 더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소년부가 설치된 법원도 더 늘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도 더 많이 늘려 달라고 하고 계시고요. 형사재판에서 참여재판 확대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민사재판에서도 해 달라는 요구

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중심주의를 더 강화해 달라고 하시고 또 소액사건에서도 지금은 이유 기재를 하지 않는데 이유 기재를 써서 국민, 재판받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유를 알려 줘라 이렇게 또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상반기에 국회에서 제정해 주신 스토킹 재판도 지금 그 사건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려면 어느 정도 판사 수가 확보가 되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판사가 이렇게 충원이 되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되겠다 하고 계획이 서야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법관 수가 부족하면 이런 것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 자료가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명단이라는 것을 사진 들어가 있는 그걸 드렸는데 지금 이 법조경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은 결국은 법조일원화를 강화해서 좀 더 다양한 경력과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을 판사로, 법관으로 임용해 달라는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법조일원화제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그게 오늘 오후에 대법원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있는데요 그때 이분들로 구성한다 보고가 될 것이고요.

여기 보면 전 국민권익위원장님도 계시고 법무부의 검사님도 계시고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민변의 지부장님도 계시고 대한변협의 이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법조일원화에 대해서 제도개선, 법원에 뭘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실 예정입니다. 첫 회의가 12월 22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자료로 전문위원실에서 배포해 드린 법원조직법 수정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법조일원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내용을, 송기현 의원님 안에다가 법원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법원조직법 본문에 넣어 달라는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본문에 이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판사의 임용에 성별, 연령, 법조경력, 종류,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하는 구문을 법원조직법 본문에 넣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에 따른 결과를, 판사임용 결과하고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법원행정처가 매년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해서 법조일원화에 관한 요구사항은 그대로 법원에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법원에서 재판받는 분들의 재판 지연 그리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원의 전문화나 재판제도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병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앞으로 한 5년간 정도는, 부칙을 개정해서 현행 제도를 5년 이상 해 달라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임용 방법에 관한 법조일원화를 위한 개혁들은 저희가 계속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간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법무부 의견 주시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방금 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법원이 사건 수 대비 법관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많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에게 신속 충분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신규 법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미 지난 기간에 현재와 같은 상황을 다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서 미리 좀 대비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난 시간이 지나간 점에 대해 좀 아쉽고 오늘 논의되는 법률안이 혹시 통과가 되어서 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앞으로 신규 법관 증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현재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있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의견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입니다.

관련된 사정에 대해서 좀 부연말씀을 드리면 2011년 이래로 법조일원화제도가 추진이 되어 왔는데 그 제도를 도입한 취지, 방법, 목표 등을 고려해서 현행과 같은 제도가 설け되었다라는 그런 경위,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경력변호사에 의한 신규 법관 증원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개정안이 그에 대한 개선대책으로서 갖는 적실성은 어떠한가, 2014년에 한 차례 연장되었던 사정 이런 점도 좀 참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당초 입법취지 달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재의 진행상황 방금 차장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시다만 그런 점도 고려도

하고 최근 같은 입법효과를 목표로 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사정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충분히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그러나 법무실장께서 지적한 부분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법을 도입해서 법조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 10년간의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법조일원화를 후퇴하는 형태의 법안을 만들어서 사실은 법원의 실질적인 역할, 기능 확대에 의한 인원 충원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했었던 사안인데 결국은 국회 차원에서 그것은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사실 지난 8월 임시회에서 내린 거거든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서 다시 그 결정을 실질적으로 우회하는 형태의, 부칙 개정안을 통해서 다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입법안,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볼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 기간 자체도 사실은 4년, 5년 이렇게 늘어나면서 사실상 국회가 가지고 있던 그 뜻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아마 바로 제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간을 좀 더 단축하는 것이 법조일원화를 바랐던 국민의 뜻에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법원에서 제시하는 원활한 법원 운영과 국민 서비스 질의 향상 측면이 결코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은 더욱더 중요성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제가 4년의 기간보다는 3년이 적정하지 않냐 하는 입장을 내겠지만 그러나 현재 사법행정의 어떤 위기상황이라는 부분도 일정 부분 공감하기 때문에 부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도 뭐, 기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최기상 위원님.

○송기현 위원 잠깐, 제가 개정안을 낸 사람으로서……

○소위원장 박주민 예, 송기현 위원님 먼저 좀

말씀하시고 최기상 위원님……

○**송기현 위원** 우선 지난번 국회에서 부결된 뜻에 대해서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취지라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법원이 그 기간 동안에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비로소 법원조직법 안에 관련된 내용을 넣으시고 매년 국회로부터 여기에 관련된 확인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이행될지 그런 데에 대한 의심이 많이, 의문이 좀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걸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쪽하고 또 다양성을 요구하는 쪽하고 기본적인 전제가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법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우수한 자원의 법관을 뽑으려고 하는 쪽에 주안점이 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쪽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쪽에서는 기준은 법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보다는 조금 못 할 수 있지만 다양성을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기본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좀 더 중시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기간을 다시 정해서 부칙을 연장한다는 것은 그 이후로는 절대 연장이 안 된다는 것을 법원 쪽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부칙을 개정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저는 마련했습니다.

5년이 아마 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길다고 생각해서…… 저는 5년, 3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현행대로 5년, 7년 이렇게 자격을 하게 되면 변호사시험 기수별로 비는, 임용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밀리는 게 이제 2년씩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5년은 너무 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5년은 너무 길다는 의견이 저거한 것 같아요. 차장님 생각에 그걸 줄인다고 하면 어느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양성 그걸 강화하는 그런 업무가 언제쯤이면 될까 생각하는지, 최대한 당긴다고 하면.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저희로서는 왜 5년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나면 1년이 연장되면 저희 예측에 의하면 83명의 법관 증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연장되면 오판에 사십 해서 400명 정도 증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해부터는 법관 수가 한 40명 정도 감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는 송기현 의원님께서 내주신 원안인 5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상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송기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너무 길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 생각은 그렇다면 한 1년 정도는 줄여서 4년을 해 주시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법원을 꾸려 나가 볼 생각인데 그보다 더 줄어들게 되면 4년만 해도 사팔에 삼십이, 320명 증원이 되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줄여서, 예를 들어서 3년이 된다면 그러면 삼팔에 이십사, 240명이어서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법관의, 이 정도 법관이 있어야 법원이 운영되겠다고 생각한 것의 한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여서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건의 지연현상을 해소한다거나 국회에서 저희 법원에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개선 사항, 전문법원 설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법원을 새로 만든다든지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 행정처 차장님, 법원조직법 수정 의견 내신 것에 관해서 잠깐 여쭙보겠습니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혹시 출신 지역과 학교 이 부분은 검토를 따로 안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지금 이 부분은 이탄희 의원께서 제출하신 개정안이 또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성별, 연령, 법조경력, 종류 및 기간입니다. 전문분야는 거기에는 없었는데 전문분야는 저희가 집어넣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최기상 위원** 저는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판사의 구성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고등학교, 특정 대학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도 반드시 시정돼야 될 부분인데요. 출신 지역과 학교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절한 용어로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

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4항 부분에도 행정처가 2항에 따른 판사임용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이라고만 돼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혹시 검토를 하셔서 빠진 것인지, 즉 판사임용 과정과 결과라고 해서 과정 부분도 가능한 한 한도 내에서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의견이?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 삽니다. 판사임용 과정과 결과, 좋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리고 오늘 추가로 주신 이 자료 중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명단 구성 중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다른 견해가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열한 분이 명단에 이름이 있으시고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돼 있으면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는 것은 확정이 된 모양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이것은 사법행정 자문위원회에서 지난번에 13명에서 15명까지라고 의견을 주셔서……

○**최기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11~13명이라고 의견을 주셔서, 보면 11명은 지금 내정이 된 상태고요. 여기에 국회공무원 하고 기재부공무원 해서 2명 더하면 13명이 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차장님도 계시고 뒤에 법원 간부들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늘 비슷한 내용이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양한 판사를 뽑고 법원 사법행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려면 위원의 구성이 다양해야 되는데 여전히 법조 엘리트 그리고 사회 엘리트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런 교수님 중이나 변호사님 중에도 그전에 법관을 했던 분들도 늘 포함이 돼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법원 출신 그다음에 법조 엘리트들 외에 보통 시민의 일반적, 보편적 법원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노력을 해도 계속 명단이 이렇다면 좀 근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재판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통 시민들이 많이 관여하는 등기나 개인회생, 파산 등

관련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실은 법무사 분들이나 법무사 출신들도 의견을 낼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외부인원 중에서도 꼭 법률가나 아니면 법조 관련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하시는 시민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길들을 계속 모색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법원조직법 수정의견과 관련한 제 의견에도 녹아 있으니까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알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이 부결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법관들이 선민의식이 심하다,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이 강해서 일반 국민들의 정서, 생각을 전혀 재판에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 그런데 그러면서 다시 5년 이상으로 해 달라, 엘리트들을 뽑겠다 이렇게 비쳐져서 부결이 된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런 정서나 이런 것에서 전혀 바뀐 건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법원이, 2011년도인가요 그때 10년 이상의 법관을 뽑아야 된다는 법 개정이 된 이후로 2021년 10년 동안 어떻게 법관을 다양하게 뽑겠는지에 대해서 개혁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법관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법관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러면 법원은 뭐 했냐, 정말 뭐 했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지금 전혀 못 하시고 계시고 이제 와서 뭐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법관을 뽑아 달라, 국민 정서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재판부를 구성해 달라는 게 국민의 염원이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법원이 그러면 제대로 다양한 인력 풀을,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들, 변호사들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도 안 보이는데, 철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나 반성 없이 아직도 오만한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만 예를 들면 시민단체나 국민들한테 굉장히 또 비판을, 우리만 또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우리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법원이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혼만 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잘못했으니까 협조 안 해 이래 버리면 그화는 국민들한테 갑니다. 미제만 무수히 늘어나고 새로운 개혁적인 시도는 할 수도 없지요, 법관이 부족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이 법안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법관들을 충원하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양한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 변호사들이 법관에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변화, 개혁 이것들을 지금이라도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걸 위해 우리가 향후 몇 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단다, 국회에 와서 법원 개혁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일을 해 나가겠단다, 이렇게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장님 목소리가 거의 개미 소리처럼 죽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니까 정말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진짜 분간이 안 됩니다. 지금 사실 솔직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만 엄청난 비난을 또 받을 것입니다, 법원이 지금까지 잘못해 놔서. 우리가 왜 그런 비판을 얻어먹어야 돼,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지금 이수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말 가슴속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그런 의지의 표현을 이 수정의견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조직법 본문에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겠다’ 하는, 그런 걸 적극 반영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 또 매년 상임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에 구성될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는 한시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상설위원회로 계속해서 법조일원화의 지속적 추진, 그리고 판사임용할 때 국민의 기대와 요청을 어떤 식으로 부응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계속 법원을 견제하고 법원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그러한 상설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다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지금 송기현 위원님이 얘기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송기현 위원 지금 다양성 관련된 위원회를 가동하면 내년 임용 때부터 적용할 수 있나요, 그 기준, 활동결과가?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지금 12월 22일에 첫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제도개선을 짧은 것들은 내년 법관임용 때부터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게 입법이나 기재부 쪽의 예산당국하고도 관계가 된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렇게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위원회의 회의결과나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송기현 위원 지금 5년에서 4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 전체적인 의견은 아마 우리 21대 국회가 가동되는 적어도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체크가 될 수 있는 정도에 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3년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새로 출범해서 그것을 적용해 보고 그것이 올해부터 하나씩 적용돼서 두 번, 세 번 정도까지 적용을 한다고 하면 성과에 따라서 다음 국회 때 다시 또 연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다음 국회까지도 당연히 연장되는 것까지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들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3년 정도 하는 것이, 단축을 해서 시작을 하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수진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생각……

○이수진 위원 3년에 대해서는 지금 차장님 대책이 뭐가 어떻게……

○송기현 위원 아니, 차장님은 계속 늘려야 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저희는 어떻게 되냐면요 3년이 되면 지금 현재보다도, 그러니까 3년 동안 240명 정도 증원효과가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차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게 기본적인 전제를 차장님이 안 바꾸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금 기준하고 좀 다른 기준을 정해 가지고 판사 정원을 늘리는, 선발 정원을 늘리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취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결정되면 재정당국이나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더 증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차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우려를 조금 더 우리가 상쇄해

서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서 일단 21대 국회 안에서 그걸 시행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려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리고 저희가 좀 우려하는 것은, 자료 11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퇴직 인원이 있거든요. 이 퇴직 인원이 2021년에 85명이 퇴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이 퇴직 인원을 저희가 67명으로 해서 예측을 한 것은 지난 10년간 평균을 했더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퇴직 인원이 지금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이 시뮬레이션이 맞는 것이냐 하는……

○**송기현 위원** 어쨌든 법원 쪽의 지금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원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고 상당히 공감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지난번 우리 법사위도 거쳤다가 본회의까지 갔던 사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상범 위원님도 가능하다고 하시면 3년 정도로 해서 논의를 종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계속해서 논의하기는 그렇고요.

○**유상범 위원** 최기상 위원님 먼저 얘기해 보세요.

○**최기상 위원** 유상범 위원님의 고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게 무슨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도 아니고 다들……

○**송기현 위원** 고양이 목에 방울은 내가 달았으니까 말씀하세요.

○**유상범 위원** 이게 올해 본회의에서 전 의원들의 뜻으로 사실은 부결된 사안이고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갖고 있는 현 상황의 문제점, 심각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니까 사실 이 개정안이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요구는 법조일원화를 이루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인 법원 판사들의 충원 문제 그다음에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판사들이 사회적 현상에 개입하라는 요구로 인해서 재판부가 급증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법원 판사들의 높은 전문성은 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 우수한 자원을 뽑아야 된다는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을 해요. 동감을 하는데 본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일원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올해 이미

한 번 국회에서 그와 같은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한 상황에서 5년이라는 장기간이 만일 여기서 결정이 된다면 결국은 국민들의 요구를 사실상 법사위에서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른 뜻으로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는 상황이 돼서 저희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행정처 차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충분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충분한 기간을 통해서 인적자원의 마련, 법원 구성의 변화를 다 도모하시려고 하시지만 현 단계에서 그걸 모두 충족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법원의 노력이 다시 반영된다면 그때 우리 다시 검토해서, 아니면 차라리 법안 본문의 개정작업 등을 통한 방법으로 다시 진행하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처에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잘 알지만 일단 3년을 받아들여서 3년으로 해서 우리가 부칙 개정안을 좀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 특별히 덧붙일 말씀 없습니다.

○**송기현 위원** 같은 의견?

○**유상범 위원** 김남국 위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김남국 위원** 저도 지난번에 법안 통과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요. 현실적인 법원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법조일원화라고 하는 국민들의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 법원이 노력을 기울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다른 방법으로 부족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사법부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어렵지만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3년이 조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예측해 가지고 법관수를 예측해서 하는 거라서 3년 정도로 합의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도 있으시니까……

○**유상범 위원** 저희가 합의하는 거니까.

○**김남국 위원** 그래서 차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신 거 알지만, 부족하지만 그렇게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일단 유예기간 3년으로 여야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 같고요.

수정의견 관련해서 아까 최기상 위원님이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남국 위원** 블라인드해서 그게 쉽지 않은 것 아니에요? 블라인드를 하고 있어서……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블라인드해서……

○**소위원장 박주민** 아, 블라인드해서 그건 안 되고, 또 최기상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게 4항 신설하면서 ‘2항에 따른 판사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이런 식으로 과정에 대한 부분도 좀 넣자고 하셨는데 그거는 행정처 어떠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저희 생각으로는 출신 학교나 지역을 여기 법에다가 넣으면……

○**소위원장 박주민**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거는 빼고요.

4항에 ‘판사임용 결과’라고만 돼 있는데 그걸 ‘판사임용 과정과 결과’로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괜찮으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다 어렵습니다. 이 법원조직법 저도 참 여러 생각이 있고 제 견해도 있는데 일단 그러면 유예기간은 여야 위원님들이 3년으로 하자고 하셨고, 법원조직법에 관련된 수정의견 중에 4항의 ‘판사임용 결과’는 ‘판사임용 과정과 결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일단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이상 2026년까지였던 것 2024년, 그다음에 7년 이상 경력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2029년부터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부칙에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힘듭니다.

8항부터 10항까지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좀 상의를 드려서,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될 1소위 안건이 있어서 점심을 먹고 나서 1소위를 조금 더 하고 전체회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소위원장 박주민** 말씀하신 국제사법이라도 할래도 지금 시간……

○**유상범 위원** 국제사법 하는 걸로 그러면 정리를 해야지……

○**소위원장 박주민** 다른 것들 안건은 이미 협의했으니까 논의를 해야 돼요.

○**유상범 위원** 아니, 다들 지금 상황이 그런데, 나도 혼자 하고 있는데……

○**소위원장 박주민** 오후에 윤한홍 간사님……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정하시고…… 이걸 어떻게 다 해요, 지금? 국제사법 우리 지난번에 3개 조 하고 끝났는데……

그러면 국제사법 하나 하고 마무리하든지 이렇게 정해야지.

○**소위원장 박주민** 이거는 정회하고 윤한홍 간사님하고 제가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유상범 위원** 그러면 간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소위원장 박주민** 예.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주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818)

○**소위원장 박주민**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지난번에 4번까지, 14페이지까지 설명은 드렸습니다.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까지 설명드렸고 논의하시다가 약간 얘기가 안됐었는데요.

지금 자료를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개

정안이지만 조문대비표하고 맨 앞에 총괄 부분에 있는 조문 이동에 관한 표 2개를 위원님 자리에 비치해 뒀습니다. 그것 보시고요.

그러면 5번부터 설명드릴까요?

○소위원장 박주민 예.

○전문위원 허병조 16페이지입니다.

관련사건의 관할 내용은 1항은 상호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수 청구 중에서 어느 하나의 재판권이 있는 경우에 여러 개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항은 주관적 병합의 요건, 3·4항은 객관적 병합 요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민사소송법의 관련재판적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실익은 증거자료 수집의 편의라든지 상이한 국가에서 소송이 계속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판결의 모순·저촉 등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피고에 대한 부당한 응소 강요라든지 과잉 관할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개 같이 설명드릴까요?

○소위원장 박주민 예, 그러시지요.

○전문위원 허병조 다음으로 19페이지입니다.

7조(반소관할)에 대한 건데 민사소송법의 반소에 대응한 조문입니다.

이것은 본소에 대응해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 경우에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 8조(합의관할)입니다. 이것은 민사소송법의 합의관할에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사자 간에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인정하고 다만 그 합의는 서면의 형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에 그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 변론관할입니다. 이것은 9조의 내용인데 민사소송법의 변론관할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없더라도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관할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일단 관할 관련돼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부처 의견을 쪽 봤더니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 혹시 의견 주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 허병조 27페이지입니다.

전속관할의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전부개정안에 보시면 10조 1호부터 5호까지의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의 공적 장부의 등기나 등록에 관한 소라든지 대한민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전속관할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간단한 워딩 문제로 10조 1항 3호에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한 소’ 해가지고 ‘관한’이라는 말이 2건 있어서 이것을 ‘부동산의 물권에 관한 소’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9페이지 국제적 소송경합입니다.

이것은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소가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고 외국법원의 재판이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승인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1번은 12조(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건 대체법정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하고 외국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가 더 좋다 그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대체법정지에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나라의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엄격한 요건 하에 관할권 행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33페이지 적용제외는 합의관할하고 변론관할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즉 나열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특별하게 뒷부분에 개별적으로 관할에 대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여기까지 제가 죽 봤더니 기관은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 중에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허병조 35페이지입니다.

14조 보전처분에 대한 건데 이것은 우리나라 법원에 본안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거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보전처분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15조는 비송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입니다.

비송사건의 경우에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의 일반원칙 및 이것을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24조(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은 검토보고 내용을 보시면 1호부터 4호까지에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실종선고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부재자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는 우리나라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관할입니다. 실종선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 호별로 관할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6번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인데 이것은 민사소송법에 있는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에 대응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법인·단체의 사무소·영업소 등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일반관할이 있는 경우에 그 법인이나 단체의 사원, 그러니까 직원이나 사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소송을 우리나라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이 저도 하시지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전주혜 위원 법무실장님, 개정안이 나오게 된 건 어떠한 내부검토 아니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내용으로 고치시는 건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국제사법이 어제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전에 섭외사법이라는 제목으로 있었는데 국제사법에 담아야 될 내용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정할 것인가 그에 대한 규정들이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됐을 경우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 준거법에 관한 것이 큰 축이고.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2001년에 섭외사법을 개정하면서 법률명칭을 국제사법으로 바꾸고 그 당시 준거법에 관한 부분을 전면개정해서 65개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준거법에 관한 부분은 2001년에 전면개정을 했는데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부분은 그와 관련된 국제 관련 규범들, 다른 나라 입법례, 대법원 판례,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법안을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유보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와 관련된 실무적인 작업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스탠더드, 다른 나라의 입법례나 국제규범들에 다 맞추어서 조문을 만들었고 그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로부터 검토를 받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다 받아서 의견들을 반영해서 지금 법안을 만든 상태입니다.

○전주혜 위원 아까 42페이지까지 했다고 하시니까, 25조 사원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특별관할을 안 정하는데 그렇게 정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 보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지금은 더 많이 그렇습니다마는 외국계 법인이 국내에 들어와 있거나 또 국내법인이 해외에 진출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법인과 사원 간에 또는 사원과 사원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될지 그걸 정할 필요는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 소위원장님, 제가 아까 못 들었는데 몇 조부터 방금 설명하셨습니까?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과 관련해서는 ‘근소한 관련’이라는 게 굉장히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든요.

○소위원장 박주민 전주혜 위원님, 몇 조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전주혜 위원 5조.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제2조가 있습니다. 제2조(일반원칙)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을 때 관할을 인정한다’라고 원칙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5조에 나와 있는 ‘근소한 관련’이라는 것은 그와 대비되

는 표현입니다.

○전주혜 위원 이런 이야기를 쓰나요? 제가 그동안에 어떤 법률을 봤을 때 ‘근소한 관련’ 이렇게는 기재 안 하거든요. 명확성의 부분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처 차장님, 어떠십니까? 혹시 ‘근소한 관련’ 이런 법률안의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보통 국제적인 규범에서는 뭐라고 하나면 코어 프로시딩(core proceeding)이라고 그래서 핵심절차라고 하고 그다음에 논코어 프로시딩(noncore proceeding)이라고 해 가지고 핵심적이지 않은 절차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는데 여기에 ‘근소한’이라고 표시를 한 것은 중대한 이해관계가 아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워딩은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있겠지만 국제 규범에서는 항상 두 나라 이상에서 재판관할을 가지게 될 때 어느 나라에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반영한 조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주혜 위원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만한 문구는 없겠습니까? 근소하다는 게 조금 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현행 국제사법 8조에 보시면, 신규 조문대비표 11쪽에 있습니다.

현행법 8조 1항에 보시면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법문의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신법에 반영한 것입니다.

○전주혜 위원 8조에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 저희가 지금은 답변을 못 드리지만 국제적인 연혁을 찾아보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전주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합의관할) 3항 ‘합의로 정해진 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걸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도 국내 합의관할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부여한 걸로 보이거든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국제재판관할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준거법을, 관할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만 국내에서의 재판과 달리 관할이 유일하게 한 지역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나라에 관할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할이 국내법과 다른 특성을 반영

해서 당사자들이 관할에 관해서 합의를 하면 그걸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문이라고 그러합니다.

○전주혜 위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문이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

○전주혜 위원 합의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한다……

행정처 차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추정이라는 건 반증을 제출해서 입증을 하면 또 전속관할이 아닐 수도 있게 된다 지금 이런 의미이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행정처 차장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보통 합의관할을 하면 전속관할 합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합의관할만 하나 정해서 다른 토지관할 같은 것도 죽 인정이 되면서 여기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합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국내라고 하면.

그런데 국제재판관할이 문제가 되면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서 재판권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 당사자가 합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미국이 당사자다 그러면 한국에서 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미국에 지금 영업소가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합의의 효력이 의미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국제재판관할에서는 국가 간에 재판권이 상충을 하니까 한 가지에서만 하자 이런 의사가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추정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분명히 이건 전속관할이 아니었고 선택적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라고 하는 반증을 내면 추정이 번복되는 것으로, 그래서 내용 자체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추가로 말씀드리면 브뤼셀 협약 17조, 브뤼셀 1규정 23조에도 관할에 관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전속적 합의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봐서도……

○전주혜 위원 ‘본다’랑 ‘추정한다’랑은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그러니까 ‘본다’는 더 강력하다는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본다’라고 해 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번복이 안 돼 버리니까……

○전주혜 위원 번복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순화시킨 내용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추정’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전주혜 위원 변론관할 같은 경우도 일반 소송법에 있는 그 내용 비슷한 거 같은데요, 그렇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 민사소송법에 있는 것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전주혜 위원 그런데 26페이지에는 이게 오타인가요? ‘제5조 재산권에 관한 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오타입니까?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 앞 부분까지만……

○전주혜 위원 앞 25페이지에는 없는데 26페이지에 있거든요. 그것은 오타인 것이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맞습니다. 제5조 이하 부분은 들어갈 부분이 아닌데 잘못 붙여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 42페이지까지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요청드릴 게, 제가 또 다른 일정 때문에 잠시 이석을 해야 되는데요. 유상범 위원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조금만……

○소위원장 박주민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4시까지 끝내 달라고 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정회하면 이게……

○전주혜 위원 그래서 오시는지 살펴볼 수 있게 조금만 시간을 줘……

○소위원장 박주민 일단은 지금은 계실 거잖아요?

○전주혜 위원 제가 지금 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소위원장 박주민 지금 바로 이석하셔야 돼요?

○이수진 위원 그냥 진행하시지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니까 아까 4시까지 끝내……

○전주혜 위원 일단 설명을 해 주시지요, 다음 조항.

○소위원장 박주민 설명을 꼭 해 주시고……

○전문위원 허병조 43페이지입니다.

38조(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입니다.

내용은 지식재산권 계약인 양도라든지 담보권 설정, 사용허락 등에 관한 소는 대한민국에서 보호되거나 사용 또는 행사되는 경우 및 대한민국

에서 권리가 등록되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관할은 41조의 일반적인 계약에 관한 소와 다르게 이게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45페이지, 아까는 지식재산권 계약이고 이것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인데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있는 경우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경우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는 대한민국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관할과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을 제출하신 법무부에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수정의견이 있어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부 얘기를……

○소위원장 박주민 수정의견에 대한 법무부 의견을 좀 주십시오.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원래 법안 39조를 만들 때 법무부 정부안 초안은 지금 추가 수정의견처럼 되어 있고, 다만 제 1·2·3호 각호로 나누는 것이 본문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열된 내용이 본문에 다 있어서 내용이 좀 산만하다고 해서 조문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39조 1·2·3호로 분리를 해서 냈는데 분리하면서 자구 수정이 원래의 내용을 조금 왜곡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아서 추가 수정의견처럼 조문을 다시 다듬었습니다.

다듬은 내용은 단서 부분에 ‘다만, 이 경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만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이 본문의 앞 부분에 보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단서에서 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문언을 좀 수정해서 ‘다만, 이 경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결과에 한한다’ 그렇게 다듬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수정된 조문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법원행정처는 이 수정 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지금 45페이지에 있는 제39조제1항의 수정은 적정한 수정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2항은 정부안이 제1항제2호 및 3호라고

했는데 추가 수정의견에 보면 제1항 전체로 해서 범위를 넓히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원래도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1항이 6조 1항 관련재판적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데 그게 지금 2항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항의 1·2·3호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중에 지금 2호·3호로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아, 위당이 잘못됐던 거였군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법원행정처는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허병조** 4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입니다.

계약에 관한 소는 계약의 유형별로 나뉘어 가지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서 의무이행지, 보통 물품 인도지나 용역제공지 등이 될 수 있는데 의무이행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50페이지 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는 소비자계약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에 최종소비자로서 목적으로 체결을 하는 계약으로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 권유 등을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일상거소가 있는 소비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수정의견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간단하게, 42조 전부개정안에 보시면 3개의 줄을 그어 놔는데 같은 내용인데 위당상에 ‘직업 또는 영업활동’인데 하나가 ‘직업활동’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일괄 똑같이 하자는 내용입니다. 간단합니다.

다음에 21번 43조(근로계약의 관할)입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 제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법무부가 추가로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여기까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게 41조 3호 같은 경우에 ‘주된 부분의 이행지’ 이것은 판단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아마 이게 특별관할인 것 같은데 물품인도지, 용역제공지까지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되는데 41조 1항 3호에 보면 ‘물품공급과 용역제공을 함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의무의 주된 부분의 이행지’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지금 외국의 국제사법 입법례나 규정에도 이런 식으로 다 규정이 돼 있나요?

그런데 주된 부분의 이행지라는 게 나중에 되면 특별관할권이 과연 우리에게 소속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텐데……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규범과 여러 다른 나라 입법례 등을 다 검토해 가지고 한 것인데 국제 통일 규범, CISG라는 유엔 통일매매규범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법조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유상범 위원** CISG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

○**유상범 위원** 그게 지금 국제사법 통일 규범인가요? 어디에서 만든 것이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유엔에서 만든 것입니다.

○**유상범 위원** 유엔 규범에…… 그런 것을 자료를 주면 우리도 같이 검토하겠는데,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렇잖아요.

CISG라는 그 규범이 번역된 게 있습니까?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자료를 같이 제공해 주면 좋겠는데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주면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통상 우리나라에서 입법례를 하게 되면 주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 어떤 형태로든지 이러이러한 경우를 예시하든지 해서 갈 텐데 단순 이렇게 기재된 것으로 이게 법 해석이 충분할지 그런 입법의 우려, 즉 공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주민** 그것은 준비되시는 대로 해주시고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다른 부분 마저 검토하시지요.

○전문위원 허병조 53페이지 근로계약의 관할 이것도 법무부 추가 수정의견이 있는데 43조 1항 같은 경우에 ‘아니한’을 ‘아니하였던’으로 한 것은 단순한 워딩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2항에 있는 ‘경우에만 법원에’와 ‘경우에는 법원에만’ 이것은 의미가 약간 달라지는데, 2항을 보시면 이것은 근로계약에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만 다툼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만 다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나라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만 할 수 있도록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특별관할 그것도 지금 과연 국제규범에는 맞나요? 이게 근로자도 마찬가지, 외국에서는 꼭 이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53페이지 말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박주민 예.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기하는 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거기에 ‘법원에만’이라는 게 축약돼서 법원 아닌 곳에서는 제기할 수 없다처럼 오해될 수 있는데 법원이라는 게 대한민국 법원을 줄인 겁니다. 2조에 축약한다라는 그 기재는 있는데요.

이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제기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소는 대한민국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재판적입니다.

○송기현 위원 수정안보다 원안이 더 맞는 것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법원에만……

○송기현 위원 그 부분은 수정의견보다는 원안……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관할권을 대한민국 법원에게만 주겠다라는 취지의 조문이어서 수정안처럼……

○소위원장 박주민 ‘법원에만’이라고 하면 케이스를 한정하는 것이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

○소위원장 박주민 ‘법원에만’ 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이게 2조 1항에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가 있어서 54페이지에 있는 2항 부분을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의미가 맞습니다.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재판관할권에 관한 규정이 되는 것이고, 수정 전 원안처럼 어떠한 경우에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관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게 되는……

○송기현 위원 아니,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규정의 취지가 그런 것인데?

제 얘기를 하면 입법의 취지하고 다르다는 얘기에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2조 본문이 입법의 취지하고 달리 조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원안이.

○송기현 위원 원안이?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 기술적으로 저희가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지금 2조 내용을 보시면 근로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이때는 대한민국 법원에만 사용자는 그 소송 제기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입니다.

○송기현 위원 그런 취지예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3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있을 때는 별도로 관할권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1호·2호에 해당하는 경우지요, 그렇지요?

○유상범 위원 그렇지요.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사용자, 국내 근로자라 하더

라도 합의만 있으면 외국 법원에서……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3항은 2항의 예외입니다.

○**유상범 위원** 예외규정을 둔 것이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합의의 내용이 1호·2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요건을 같이 충족하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다음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 허병조** 56페이지입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입니다.

이것은 표 오른쪽의 조문 내용을 보시면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첫 번째로 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해진 경우, 이것은 불법행위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이고 두 번째는 불법행위의 대상이 대한민국인 경우이고, 이것은 대상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세번째로는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가 대한민국, 이것은 결과발생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에도 불법행위의 특별관할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 예견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관할에 관한 얘기였고요.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지.

○**소위원장 박주민** 예.

○**유상범 위원** 대한민국에서 행해진 경우는 관할권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결과 발생도 당연히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보는 것은 맞고.

문제는 ‘대한민국을 향하여’라는 개념이 지금 해석을 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경우를 상정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법무부, 질문에 답을 좀 주시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

지금 대한민국……

○**유상범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에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데 결과 발생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에 결과가 발생이 됐을 때도 그때는 대한민국을 향하여로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으로 가는 것이지.

그런데 ‘대한민국을 향하여’라는 게 어떤 의미로 규정이 된 거예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이 조문 이외에도 다

른 조문에도 이렇게 행위지, 결과지……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향하여’라는 게 지금 민사상 어떤 경우를 상정해서 국제사법에서 우리가 불법행위로 보느냐……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아마 이런 개념의 표현이 다른 조문에도 여러 개 있는데요. 이게 국가와 국가의 국경을 넘어 드는 사건에 관한 것이고, 특히나 근래에는 온라인상을 통해 가지고 계약 등이 많이 행하여지다 보니까 그 행위 자체는 외국에서 행해지지만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 그런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에 대해서도 관할을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유상범 위원** 너무 추상적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법을 만들 때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관할권을 인정합니다 이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니까, 거기에 보면 조문에 ‘불법행위의 대상이 대한민국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민사상의 관할권 아닌가요, 형사상의 관할권이 아니잖아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 민사에 관한 것이지요.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민사상의 관할권을 얘기하면서 불법행위의 대상이 대한민국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디도스 공격 이런 것을 얘기하나?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대표적으로 그런 것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유상범 위원** 그런데 그것은 결과 발생을 했잖아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그게 결과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결과지를 가지고 관할을 정하는 것이지만 그에 미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온라인 거래가 많아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만 전통적으로도 선박을 통해서 이동하거나 국가의 경계에서 경계 그 사이에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관할도 포함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불법행위의 대상이 됐을 때 그게 과연 어느 경우를 상정해서 이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의,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또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 이런 것을 계

산하는 것인가요?

물론 해킹이 실패했지만 나중에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렇게 보는 것인가요? 이것을 어떤 행위를 전제로 이렇게 관할이 규정돼 있는지를 좀……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를 들어 보면 국제적인 인터넷서비스를 매개로 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예의 하나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게 들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라는 것은 국제 인터넷서비스를 매개로 해서 대한민국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게 대한민국을 향하여라고 말하기는 좀 틀리잖아요? 저작권은 다 개인적 권리인데 그 행위를 침해한 것이 대한민국을 향한 불법행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이 좀 그렇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그러니까 향하여라는 게 대한민국이 그 행위의 상대방, 객체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을 확장하는 그런 의미…… 첫 번째는 행위지, 두 번째가 대상지, 그다음이 결과발생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대한민국을 향하여라는 것은 그 장소를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불법행위의 목적, 불법행위의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장소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장소적 개념입니다.

○**유상범 위원** 장소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 장소적 개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다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작권 침해사례의 상당수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데 그것을 침해하는 대부분의 사이트는 해외 소재 서버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그러한 경우를 표현할 때 국내에 저작권자가 있고 그런데 해외에 있는 서버에서 국내에 있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런 것을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저작권 침해의 불법행위라고 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네이버 지식인에 나온 내용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논문입니다. ‘국제인터넷서비스를 매개로 한 저작권침해의 대응방안 연

구’라는 것을 제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유상범 위원** 설명한 거예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용역 결과보고서네요. 거기에서 예로 들어와 있습니다.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에 한국 법인이 있는데 거기 한국 법인의 서버를 미국에서 공격을 한 경우, 그것은 행위지도 한국이 아니고 결과발생지도 한국이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한국을 향하여 한 것으로 봐서 관할권을 인정한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행위지, 결과발생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관할권을……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이 부분은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그렇시다.

○**소위원장 박주민**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허병조** 58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관할이었고 지금부터는 준거법인데요.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어디로 할 것인가는 특별관할 신설에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준거법 역시 행위지와 결과지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52조의 내용입니다.

○**유상범 위원**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이 조항에는 왜 포함이 안 됐지요?

○**전문위원 허병조** 이것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유상범 위원** 아, 준거법이구나.

○**소위원장 박주민** 넘어가도 될까요?

○**유상범 위원** 예,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박주민** 다음.

○**전문위원 허병조** 다음은 60페이지인데 지금부터는 친족관계에 관한 특별관할입니다.

56조는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인데 그 밑의 전부개정안 내용에 보시면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원고와 미성년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관할을 인정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케이스, 어떤 경우가 되는지 이것은 그 밑에 호로 죽 나열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유상범 위원 조금 보고 갑시다.

○소위원장 박주민 예.

○유상범 위원 읽어서 봐야지, 그래도.

이건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다음.

○전문위원 허병조 62페이지 친생자관계 및 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입니다.

첫 번째로 친생자관계의 성립 및 해소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하고 자녀와 피고가 되는 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대한민국에 국제관할을 인정하고.

다음 두 번째로는 입양의 성립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양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양친이 되려는 사람, 자하고 부 모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국제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친자관계 존부확인이라든지 입양취소, 파양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에 관한 특별관할을 준용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것은 양자가 되려는 사람, 양친이 사실은 외국인이면 특별관할이 보통 그 나라에도 관할이 있지 않나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그 나라에도 관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결국 소를 제기하는데 우리에게도 관할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것입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다음.

○전문위원 허병조 64페이지입니다. 59조(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입니다.

이것은 부모·자녀의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친권이라든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부모 중 한쪽과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다음 60조(부양에 관한 사건

의 관할)는 부양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부양권리자, 그러니까 예컨대 미성년자 등이거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부양권리자입니다. 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관할은 인정하지만 부양권리자가 미성년자라든지 피성년후견인 등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합의의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합의관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의 추가 수정의견이 있는데 밑의 1호에 보시면 ‘피성년후견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옆 67페이지에 보면 후견제도가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후견이 있고 성년후견제도도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 보통 말하는 성년후견도 있고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기 때문에 전부개정안 수정 전의 것으로 보면 밑의 성년후견 중에서 하나만 해당되는 건지 다 해당되는 건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수정의견을 내 온 것은 ‘피후견인’으로 해 가지고 4개를 다 합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런 표현이 뒷부분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이것은 법원행정처 의견을 들어……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유상범 위원 피후견인 그러면 또 미성년도 포함이 되기는 하네요, 그렇게 되니까. 미성년자이거나라고 규정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피후견인 그러니까 미성년후견인도 ……

○전문위원 허병조 미성년자는 따로 앞에 있기 때문에…… 보시면 ‘부양권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그래서 미성년자는 따로 돼 있고요. 뒷부분에 피후견인인데 옛날 거에는 보면 피성년후견인으로 해 가지고 성년후견제도 중에 1개만 되는 건지 다 포함되는 건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년후견제도가 마련돼 있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다 포함을 시키는 개념으로 피후견인의 개념으로 썼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 전부개정 법무부에서 한 것은 미성년자와 성년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한 건데……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성년후견인제도의 종류가 네 가

지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후견만 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고치긴 한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피후견인 그러니까 사실은 그레 놓으면 미성년자라는 규정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미성년자라고 해서 항상 피후견인인 것은, 아닌 경우도 있어서 별도로 놔둔 것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부양권리자가 미성년자에게 되면 당연히 후견인이 있지 않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아니요, 친권자가 있으면 후견인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법정대리인……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다음은 69페이지 후견에 관한 사건의 관할입니다.

후견에 관한 사건에 대해 성년후견과 미성년자인 자녀의 후견으로 나뉘서 했는데 여기에도 법무부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61조 2항에 보시면 ‘미성년인 자녀’로 돼 있는데 미성년자이기만 하면 되지 자녀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성년자하고 미성년자 이렇게 해서 그 워딩을 약간 바꿨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의견……

○유상범 위원 그러면 워딩을 미성년으로 바꾼 건가요?

○전문위원 허병조 예, 미성년으로 바꾼 겁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상범 위원 그러면 워딩을 ‘미성년인 자녀’가 아니라……

○전문위원 허병조 ‘미성년자의 후견’ 이렇게, 2항 같은 경우는 ‘미성년인 자녀’ 부분이 법무부에서 바꾼 워딩으로는 ‘미성년자의 후견’ 이렇게 됩니다.

○유상범 위원 개정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미성년인 자녀를 어떻게 바꿨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허병조 ‘미성년자’ 이렇게, 지금 법무부 추가 수정의견……

○유상범 위원 미성년인 사람?

○전문위원 허병조 2항에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거 지금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유상범 위원님, 별도

로 신규 조문대비표가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어디에 있어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따로 배포된 자료가 있는데요.

○유상범 위원 없네요, 저한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61조 보시면 반영돼 있습니다.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29페이지입니다.

○유상범 위원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이 심사자료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미성년인 자녀’를 ‘미성년자’로 바꾼 겁니다.

○유상범 위원 미성년자?

○소위원장 박주민 예.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61조 1항에 밑줄 치고 ‘성년후견’이라고 기재돼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성년후견’이라는 표현 대신에 ‘성년인 사람’으로 바꿨고 2항의 ‘미성년인 자녀’ 여기는 그냥 ‘미성년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유상범 위원 후견은 친자관계에만 되는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가사조정사건의 관할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이 법의 7장이 친족편인데 제56조부터 61조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이게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조정사건에 대해서도 관할이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조정사건에도 관할이 적용되는 건데 법무부에서 추가 수정한 것은 법문에 보면 ‘국제관할’로 돼 있는 것은 ‘국제재판관할’의 오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워딩이고요.

다음에 이 뒷부분 보시면 76조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는데……

○유상범 위원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페이지?

○전문위원 허병조 저희 자료 72페이지인데, 62조를 보시면 법무부가 추가 수정의견이 있다고 한 부분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56조부터 61조까지 내용에서 워딩이 ‘국제관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제재판관할’의 오기다, 재

관이라는 말을 넣어 주는 단순한 위딩이고요.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법원행정처가 추가 의견을 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조정사건 중에서 친족사건도 있지만 상속사건도 조정사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사건에 대해서도, 뒷부분 상속편에서 상속 조정사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게 없으면 상속사건의 관할은 그대로 유지하자 그 내용을 76조 5항에 담았고, 그 내용이 여기 법원행정처가 추가의견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속사건에 대해서도 조정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76조 5항에 담아 났습니다.

○유상범 위원 잠깐만 볼까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심사자료 79페이지에 있는 밑줄 그은 5항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그 내용은 자료 79페이지에 있습니다. 79페이지 보시면 수정의견에 76조 5항으로, 상속편 끝부분에 상속 조정사건에 대해서도 상속에 관한 관할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지금 전체 법체계가 제7장은 친족편이고 제8장은 상속편입니다. 그래서 62조는 7장 친족편의 가장 마지막 조항으로서 본안사건의 재판관할권이 있으면 관련된 친족 조정사건도 관할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 상속편인데 상속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쓴 다음에 그 마지막 조항으로서 본안사건의 관할권이 있으면 조정사건에 대해서도 관할이 있다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허병조 74페이지입니다.

75조(후견)의 준거법인데 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성년 또는 미성년자녀인 외국인의 후견사건에 대해서는 후견사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추가 수정의견을 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미성년자녀’ 부분에 대해서 ‘자녀’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후견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 부분을 빼고 ‘미성년자인 외국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77페이지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인데요.

내용은 상속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그러니까 사망한 분이겠지요. 사망한 분의 사망 당시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와 대한민국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을 인정하고 당사자 간의 관할 합의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 및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변론관할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추가 수정의견을 냈는데 후견제도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미성년자하고 성년자를 나누고 성년자에는 또 4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울러서 ‘미성년·성년 후견’ 부분을 ‘피후견인’으로 전부 표현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상범 위원 제9조가 뭐였지요, 규정에 보면?

○송기현 위원 변론관할.

○유상범 위원 변론관할인가요, 9조가?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다음.

○전문위원 허병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에서 마지막 76조 5항에 조정사건의 경우에도 상속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법원행정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76조 5항으로.

○소위원장 박주민 예.

○전문위원 허병조 다음은 81쪽의 79조(어음·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입니다.

어음·수표에 관련해서 지급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유상범 위원 지급지대로 가나요, 어음·수표는?

○송기현 위원 지금 지급지로 하잖아요?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관할이 가는 게 맞나?

지급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음·수표 특별관할을 했는데……

○소위원장 박주민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급지로 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국내 소송이면 지급지가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지급지가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소위원장 박주민** 다음.

○**전문위원 허병조** 83페이지입니다.

89조부터 93조까지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입니다.

이 내용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사건이나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사건, 공동해손, 선박충돌, 해난구조의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추가 수정을 했는데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로 되어 있는 것을 ‘압류 또는 가압류된 곳’으로 장소적 개념을 넣어서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위딩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 이걸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1호에서 4호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압류·가압류된 곳이란 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면 본안소송도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 이런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게 국제적으로도 지금 공통된 관례로 되어 있나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 제가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그 영어 표기를 번역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대로 번역한 건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84페이지에 약간 의문이 있는데요. 84페이지 밑줄 그은 데 보면 ‘압류를 갈음하여 담보가 제공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압류에 갈음하여’ 이게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압류에 갈음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압류를 갈음하여’라고 되어 있어서……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통상적인 어법이 ‘압류에 갈음하여’가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것은 국어사전 어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갈음하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갖는지.

○**송기현 위원** ‘갈음하다’라는 게 타동사라 목적어가 필요한 건데……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뭐뭐를 대신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송기현 위원** 뭐뭐를 대신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에 대한 조사가……

○**유상범 위원** ‘에’를 쓰는 건 좀 이상하지.

○**송기현 위원** 예. ‘에’라는 건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압류를 하는 경우에 갈음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압류를 갈음하여’라는 게 문장 자체로는 맞는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제가 지금 구글로 인터넷 찾아봤는데 ‘압류에 갈음하여’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압류를 갈음하여’ 하니까 1개도 안 나왔습니다.

○**송기현 위원** ‘압류를 하는 경우에 갈음하여’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원래. 그러면 다른 법률과 같이 익숙한 표현으로 쓰시지요, ‘압류에 갈음하여’로.

○**유상범 위원** ‘압류에 준하여’ 이것은 어법상 맞는데……

○**송기현 위원** 그렇지요, ‘에’를 쓰는 것은 ‘뭐뭐 하는 경우에 갈음하여’ 이렇게 할 때 ‘에’를 쓰는 것이고. 원래 ‘압류에 갈음하여’가 맞겠지요, 법률적으로는 압류라는 행위에 갈음하여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기현 위원** ‘압류라는 처분을 갈음하다’ 하면 ‘압류를 갈음하여’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정리하면 맞을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지금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압류에 갈음하여’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기재례가 나오는데 ‘압류를 갈음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재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대신한다고 하면 ‘~을(를) 갈음하여’가 될 건데 어떤 행위를 대신하여 하면 ‘에’가 맞지 않을까……

○**유상범 위원** 국어사전의 그 어법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맞춰야지.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압류에’로 정리를 하는 겁니까?

○**송기현 위원** 그건 전문위원이 찾아서 알아서 하세요.

○**전문위원 허병조** 예.

○**소위원장 박주민** 지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전체를 다 살펴봤고요. 정부가 부분적으로 수정한 부분들 또 위원님들 의견 주신 부분들이 있습

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117)

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86)

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6)

1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4)

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2)

2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34)

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86)

2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01)

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4)

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20)

2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1)

(15시36분)

○소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5항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야당 측과 협의해서 소위자료 첫 부분인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도입 부분만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11항·12항·13항은 안 합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아까 4시까지라고 얘기하셔서 이거 해 보고 시간이 되면 논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게 임의로 순서를 마음대로……

○소위원장 박주민 아까 윤한홍 간사님하고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하기로 하긴 했거든요.

○유상범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박주민 예.

○유상범 위원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계속 그러네……

○소위원장 박주민 제가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진선희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진선희 자료 중에서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도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도입은 정부안을 포함해서 4건의 개정안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악화돼서 더 이상 영업을 유지할 수 없는 임차인에게 일정 요건을 전제로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해지의 효력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또는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각 개정안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해지권 행사요건이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임차인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의 안은 경제사정의 변동이라든가 재난상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서 요건에 일부 차이점은 있습니다.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3개월 이상 받고 또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이 세 가지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력발생시기로 정부안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민병덕 의원안이나 전용기 의원안은 1개월 그다음에 장혜영 의원안은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데 해석상으로는 도달한 날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적용례는 3개의 개정안이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상가임대차계약상에 특별한

해지조건이 없는 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생겨도 임차인은 현행법 11조에 따라서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해당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각 개정안들의 취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당사자의 해지권은 판례와 학설을 통해서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11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 외에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신규로 인정하면 임차인은 개별적 사정에 따라서 차임감액청구권 또는 해지권을 선택할 수 있어서 임차인 구제의 실효성은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입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가 있고요 또 임대료 소득을 기초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지요건에 대해서는 각각의 개정안들이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고 또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 등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무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과 요건 간의 인과관계 즉 집합제한 또는 금지, 그로 인한 경제사정 변동, 폐업 이 세 가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각각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경우에는 다툼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각각의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다든가 사적자치 제한 그다음에 임차인의 매출감소에 대한 위험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해지효력의 발생시기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월 또는 3개월로 개정안들이 규정하

고 있는데요. 현행법 10조 5항에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안과 같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한 적용입니다.

이 부분은 부칙의 적용례에 대한 사항인데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 해지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중에 신규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나 이 부분의 고려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액임대차에 대한 적용인데요.

현행 제10조의9,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 개정하신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임시 특례인데 당해 조항 같은 경우에는 고액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들에서는 고액임대차 부분을 뺐는데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고액임대차의 경우 임대료 부담이 더욱 큰 점도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할지 여부도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시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 법리라는 것은 우리 판례상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계약책임의 원칙의 예외를 정하는 것이어서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 법률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용범위를 가급적 제한하려고 했고, 그래서 정부안 이외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들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요건을 특별재난지역이라든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으로 넓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지는 것 아닌가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정부는 그런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법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집합 제한·금지조치를 받는 경우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법·제도의 예외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정부안 중에 법안에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용되어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1항 2호의 내용은 ‘홍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조문을 근거로 집합금지 또는 제한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법조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조문을 만들고 나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다 보니 현장에서는 2호뿐만 아니라 2호의2, 2호의2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그래서 ‘등’이 들어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49조 1항 2호뿐만 아니라 2호의2를 근거로 해서 집합금지 또는 제한을 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분쟁까지 포함해서 해결을 하려면 법조문에 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에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하도록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이런 재난상황을 피하기 위한 입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긴급한 입법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 조문을 시급하게 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점만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개정안은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민생안정을 위해서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를 예상하고 만든 법일 텐데, 11페이지에 저희 의견을 써 놔는데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

이런 곳은 코로나19 경제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인데 지금 개정안은 이 사람들도 상가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유상범 위원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님은 고액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포함되듯이 보이는 것이 오히려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진선희 전문위원은 고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료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인데 그로 인한 충격도 크다, 그렇다면 여기도 같이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입장이네요.

○전문위원 진선희 두 가지를 같이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를……

○유상범 위원 결국 고액임대차를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해야 된다는 건데, 이 규정에 의하면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는 상황이지요?

○전문위원 진선희 아닙니다.

○유상범 위원 그것은 아니고?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위원님, 지금 정부안은 9쪽에 보시면요, 9쪽에 고액임대차에 대한 적용 이슈가 표현돼 있는데 고액임대차도 포함을 하려면 각주 7번에 나와 있는 적용범위 제2조 3항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해야 고액임대차도 포함이 되도록 되는데 현재 정부안은 그 부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난번에 같은 이유로 특례규정, 갱신청구권 관련된 특례규정을 만들 당시 그때도 정부안은 고액임대차까지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액임대차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주 7의 2조를 보시면 10조 규정이 포함돼 있는데요, 그렇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정부안에는 이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포함할지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계약 갱신요구 임시 특례조항에는 나중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포함이, 들어간 거

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 그렇습니다.

○**김남국 위원** 그러면 이게 법체계상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체계를 생각하면 그게 일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국 위원** 그리고 또 고액임대차의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 해당될 수 있고 임대료 부담이 오히려 거꾸로 더욱더 부담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법체계상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법무부 실장님,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정부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조목조목 우려점을 의견을 냈어요.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도대체 어느 경우냐 그다음에 집합제한하고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 3개월 이상이라는 표현이 계속 연속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냐 아니면 특정 기간 내의 합계가 3개월 이상이면 되는 것인지 이런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일단 3개월 이상 부분은 조문의 의미는 계속하여 3개월이 아니고 합계 3개월이라는 의미고요. 반대로 계속하여 3개월로 한정하려면 조문 자체를 다른 경우에도 보면 ‘계속하여 3개월’ 이렇게 명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 자체로 효력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권을 입법화를 하다 보면 법 기술적으로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으나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료집 4쪽에 보시면 각주 1번에 현행법에 포함돼 있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조항인데요. 이것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서 개정이 된 것인데 그 조문 내용을 보시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이런 경제사정의 변동과 관련된 것을 입법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아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달리 더 좋은 대안이 없어서 과거에도 이런 조문을 사용했던 것을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상범 위원** 이것을 구체적 예시규정을 하나 넣어야지 그래도 어떤 기준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시를 넣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규정의 명확성을 피하고 또 적어도 그 기준, 일용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이다 이렇게 애기가 되면 통상 보통은 전체 매출에서 어느 정도의 감소 등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실무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구체적인 기준은 있어야 될 거라는 것은 공감됩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은 그게 중대한 변경이냐에 대한 판단이 모두 다 법원으로 넘어가서 다툼이 될 텐데, 지금 우리 판례상 중대한 사정변경에 관련돼서 법원에서 이리이러한 경우라고 이렇게 예시하는 게 있지 않나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그 규정, 그 예시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그것을 일종의 근거 규정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가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정부안도 사실은 그나마 극히 예외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건데 다들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폐업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구제를 받으려면 어떤 합당한 기준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요, 법 기술적으로, 만약 한다면?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법원행정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부안 11조의2에 보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앞에 원인이 좀 특정이 되어 있거든요.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 3개월 이상 이렇게 약간 좀 구체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라는 것이 다른 예시가 없이 그냥 그 조항만, 그 문장만 딱 있는 것하고는 달리 정부안은 이 경우 구체적으로 좀 특정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 중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을 했는데 3개월이나 지나야 이게 해지가 된다, 이것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

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해지권 행사의 경우에도 3개월로 되어 있는 면이 하나가 있고요, 실정법상 비교법적으로 보자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 동시에 상대방에 있는 임대인의 손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도 일정 정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쌍방의 이익을 형량해 주는 방식이 아닐까 하는 고민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폐업까지 한 마당인데 해지를 못 하면 계속 그 차임은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수진 위원 임료가 나가는 거고……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도만 일단 만드는 것만 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최기상 위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예, 하시지요.

○최기상 위원 저는 쪽 말씀을 들었더니 법무부 법무실장님 말씀 정도의 수정이 이루어지면 정부안대로 의결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법원행정처에서는 집합제한의 경우는 빼고 집합금지로 제한하자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국 위원 집합제한을 뺀다고요?

○소위원장 박주민 집합제한을 빼고 집합금지업종에 하나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제한이 포함되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괜찮을 것 같습니까?

○김남국 위원 금지만 돼 버리면 너무 좁아지고……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너무 좁아지고 집합제한의 유형이 또 굉장히 다양해서 거의 금지에 준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서요. 그다음 요건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통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남국 위원 법무실장님,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해지권을 행사했을 때 불명확하게 하거나 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또 이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소송으로 가 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면 명확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분쟁의 소지가 좀 적은 것인지, 그것 하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굉장히 될 해도, 굉장히 명확하게 한다고 해도 또 현장에 가면 어쨌든 다들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또 분쟁으로 가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만약에 분쟁으로 갔을 때 법원으로 가지 않고 법무부에서 이 법률적인 관계를 해소하거나 안내하거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이 법을 개정하더라도 현장에서 작동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법조문만 가지고 여기서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뭔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응 생각하는 것은 지금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에 설치가 되어 있고 최근에 많이 확대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건데 법률에다가 그것을 담는 것을 좀 어려워 보이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지침 이런 것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보증금의 액수, 매출 금액 정도 그다음에 이익의 금액 정도 이런 것들을 세분화시켜서 거기서 계약 해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해지권을 행사했지만 그 과정에서 조정을 해서 금액으로 해서 계약관계를 유지시킬 수도 있게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도적 대책으로는 지금 법률안들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비송사건화해서 신속하게, 그런데 또 비송사건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분쟁조정센터를 활성화시키되 거기서 또 다 해결은 안 되고 일부는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사법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 이것도 같이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일단 위원님들도 아주 예외적으로 해지청구권은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실물경제에서 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까? 그러

니까 해지권을 인정해 달라는 수요가 지금 많이 있는 건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폐업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유상범 위원** 폐업하는 경우……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 그다음에 감액을 해 달라는 요구는 그것은 아주 많아 보이고.

○**유상범 위원** 그것은 많이 있고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법률 자체의 법적 효과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건데 실제 현장에서는 감액, 증감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잘 안 되는데 해지청구권이 법제화되면 그것이 증감청구권을 활성화를 시켜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증감청구권이 바뀌고 해지청구권이 훨씬 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증감청구권이라는 부분보다는 다들 해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해지로 인한 요청들이 급증을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임대료 증감청구를 하는데 다 감액청구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사실은 건디기 어려워서 그렇게 진행하는 건데 해지청구를 인정하면 이분들은 3개월 치 임료만 내고 사실은 나머지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자기가 엑시트(exit)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그게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면.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와 관계없이 폐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때 아까 진선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게 첫째는 이 기간 중에, 코로나19 기간 중에 신규로 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고액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에게도 범위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것만 우리가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아마 해지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압구정동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은 업소들이 다 폐업을 했거든, 사실상. 그런데 그분들은 결국은 기간 남은 만큼 임대료를 계속 지급해야 되는 그 문제 부담이 크고, 그것을 어쩔 거냐 우리가 국가에서 해소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 법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논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위원장 박주민** 지금 경제적인 충격이나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무슨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그래서 말이에요.

○**소위원장 박주민** 참 그 부분이 안타깝네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저희가 이것 검토할 때는 이것의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에 대해서, 위원님은 오히려 해지권이 굉장히 활성화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시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인 입장에서든 계약이 해지돼 버리는 것보다는 차임을 감액해 줘서 계속 유지하게끔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의사의 방향이 조정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를 했던 거고, 이것은 제도를 시행해 봐야 확인되겠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계약해지권을 그래도 도입을 해야 되겠다고, 도입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게 임차인은 폐업을 하거나, 지금 폐업한 경우 아닙니까? 폐업하면 아무런 수입이 없이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데 임대인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건물을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액을 깎거나 업종을 변경시켜서 다시 사용, 임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돼서 그 두 양쪽이 각각 입게 되는 피해들을 비교해 보면 해지권을 도입하는 것이 임차인이 얻게 되는 이득 또 임대인이 잃게 되는 손해 이것을 비교해 볼 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미 폐업해 가지고 가게 다 비우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월세만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임차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폐업을 했는데 가게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임대인한테 원상회복해 줘야 되거든요. 그 원상회복비용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주 작은 가게도 보통 몇천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이 조항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바로 그냥 해지하고 원상회복비용 수천만 원 더 내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선뜻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우선은 임대인한테 지금 사정이 힘드니 감액해 주시고 거절당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몇천만 원 추가로 돈이 들더라도 해지하고 원상회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것 같아서 약간 이게 해지

를 많이 할 거다, 이것은 꼭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상회복비용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적용범위도 2조 1항의 단서를 폐업으로 인한 것에는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그것은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법체계상으로 보면 일관성상으로 보면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통계를 좀 볼 수가 있을까요, 폐업을 한 통계 같은 것?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 어떤 요구나 문제점이 제시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임차인 보호의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법안을 낸 건데 논리적으로 법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자칫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놓았더니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드러나면 입법의 의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한 의도가 오히려 훼손되는 측면이 있어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 법을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변화를 유도할 거냐 이런 차원이 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제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한 분석 없이 갑자기 선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나간다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항이라서 최소한 법무부에서 이 법을 낼 때 현재 적어도 실질적인 그런 요구사항이 제대로 정리된 자료가 있든지 될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자료가 있나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도 냈을 건데 자료를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소위원장 박주민 웬지 필요한 법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많이 의견들을 주신 것 같고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기상 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적용례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안처럼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해도 별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가령 코로나19 상황 중에 신규로 계약한 경우에는 그것을 근거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 여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처럼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 적용하여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남국 위원 존속 중인 임대차에 적용하지 않

는다라고 하면 사실 이 법안 개정법이 반쪽짜리, 쓸모가 없어 버려서 저도 최기상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고액임대차의 경우 부칙규정을 개정해서, 적용범위 조정해서 적용시키는 것은 어떻게……

○최기상 위원 체계상 같이 적용을 한다는 게 아까 법무부의 의견이었어요.

○유상범 위원 지금 임대기간이 상가 임대차가 보통 한 2년 아닌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상가 임대차는 좀 겁니다. 주택은 통상 2년인데 상가는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3년, 5년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보통 5년으로 간주하고 그러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예.

○최기상 위원 5년까지는 보장해 주는……

○유상범 위원 갱신했다 그런다면, 갱신했는 경우에 적용을 배제한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줄어드는 거지요?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그렇지요.

○유상범 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렵네, 참.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아마 갱신까지 한 경우에는, 보통 3~5년 계약에서 갱신했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상당히 자리를 잡은 경우여서 폐업으로까지 이어지는 확률이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법무부에서 중요한 조사를 안 이루어 놓은 상태로 선행적인 규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한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데……

○법무부법무실장 이상갑 이 법을 정부가 입법 예고했을 때 그 무렵부터 그 후에 이 해지권이 남용되어서 임대인이 여러 가지 큰 손해를 입는 다거나 혼란을 초래한다거나 계약책임 법리에 반한 거라든가 이런 식의 부정적인 비판적인 여론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법을 만드는,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는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고액임대료의 경우에도 이것은 아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사항이라서 그것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해지청구권을

입법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한번
가 보시지요.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저희 위원들 뜻은 그
렇게 모아진 것 같아서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
시면……

○전문위원 진선희 위원님, 정리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2조(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
고요. 그다음에 11조의2 안에서 아까 법무부 법
무실장이 얘기하신 부분, 그러니까 2호뿐만 아니
라 제2호의2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조치 포함하는
부분 그것을 조문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속하여서인지 총인지 애매한 부분
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른 제한조치를 앞에다
가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로 해서 ‘총’을 넣
어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 2조 3항도 수정을 해야지요. 11
조의2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 진선희 예, 맞습니다. 2조 3항에다가
는 11조의2를 포함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문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
15항과 제18항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논의하신 4건의 법률안 중에 장혜영, 민병덕 두
분 의원님 안은 다른 내용이 있어서 계속 심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항의 정부안 그리
고 18항의 전용기 의원안은 대안에 반영하는 취
지로 의결을 방금 했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돼 있었던 다른 법률
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더 이상
논의하기가 어려워서 다음 기회에 나머지 법률안
들은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
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 남 국	박 주 민	송 기 현	유 상 범
이 수 진	전 주 혜	최 기 상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진 선 희
전 문 위 원	허 병 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 무 부 법 무 실 장	이 상 갑
---------------	-------

○법원측 참석자

법 원 행 정 처 차 장	김 형 두
---------------	-------